

#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19

제출년월일 : '98. 9 9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제안이유

- 98년도 조직개편으로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계장으로 표기된 부분을 조직개편 내용과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임.

## 주요골자

가. 「별표」 중 일부 변경

3. 읍·면의 계장이하 소내 전보권” 을 “읍·면 직원의 소내전보권 “ 으로 변경  
(안 별표 제3호)

##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중 3. “읍·면의 계장이하 소내전보권” 을 3. “읍·면 직원의 소내전보권”  
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본문(생략)	본문(현행과 같음)
[별표]	[별표]
1.2(생략)	1,2(현행과 같음)
<u>3.읍·면의 계장이하 소내 전보권</u>	<u>3.읍·면 직원의 소내 전보권</u>
4~37(생략)	4~37(현행과 같음)